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28
----------	-------

발의연월일 : 2025. 10. 27.

발 의 자 : 윤영석 · 박덕흠 · 곽규택
구자근 · 이상휘 · 권영세
정동만 · 김상훈 · 박수영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세법」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부터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두배인 1%로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음. 그러나 교육세는 간접세로서 법적 납부 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를 수 있고, 특히 독과점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납세의 전가가 다른 시장보다 크게 발생함.

특히,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들과 일반 소비자를 연결하는 결제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는 1차적으로 가맹점이며, 일반 소비자도 신용카드사 결제 서비스의 간접적 소비자의 지위에 있음.

한편,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영세·중소 가맹점으로부터는 최저 0.4%의 우대수수료만 받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등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 수익 및 연회비 수익의

상당 부분은 마일리지와 제휴할인 등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반환되고 있음.

그러나 결제 서비스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까지 교육세가 2배로 인상된다면 신용카드사의 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맹점과 소비자들에 혜택 축소와 비용 전가로 이어질 것임.

더구나 신용카드사의 전체 수익 중에서 가맹점 수수료는 2023년 기준 23.2%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세율을 현행으로 유지하더라도 신용카드사의 나머지 수익에 대한 교육세 인상을 통해 교육재정 확보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음.

이에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한하여서는 종전과 같이 0.5%의 세율을 유지하고, 고객 혜택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가 제안한 교육세 인상안이 실행될 경우 영세·소상공인 등 가맹점 및 일반 소비자에 대한 전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에는 1천분의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해당 수익금액은 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수료”를 “수수료(「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수익, 연회비 수익, 카드 고객의 혜택 제공을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할인, 마일리지 비용 및 제휴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 -----. ----- ----- ----- ----- ----- ----- ----- -----.		
호별	과세표준	세율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1	----- -----	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에는 1천
2~4	(생략)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의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해당 수익금액은 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수
수료(「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영세·중소 가
맹점에 대한 수수료 수익, 연
회비 수익, 카드 고객의 혜택
제공을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할인, 마일리지 비용
및 제휴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생 략)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	---